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98호)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0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한병도의원안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2.

다. 회부연월일 : 2024. 7. 3.

2. 김석기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석기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18.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한병도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3.3.23.)하고, 입법 개정 때까지 적용 중지와 함께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권고함.

국회가 권고한 시일 내에 개선 입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비업 종사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는 바 해당 조문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고, 만약 경비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9조)

2. 김석기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¹⁾.

한병도의원안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문제가 된 시설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등 다른 경비업무²⁾에 대해서도 경비업자가 그 전념성을 직접 훼손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제7조제5항),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에 대해 필요적 허가취소 규정을 임의적 허가취소·영업정지 대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제19조제1항 및 제2항).

1)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9 전원재판부 결정

2)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 5. (생략)

김석기의원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① 제7조제5항에 단서를 추가하여 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대상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제19조제1항의 경비업자에 대한 필요적 허가 취소 사유에서 시설경비업무 중 제7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려는 것임(제2호).

현행	한병도의원안	김석기의원안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④ (생략)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u><단서 신설></u>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다만,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u>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다만,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u>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 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5항의 규 정에 위반하여 허 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 원을 종사하게 한 때	<삭 제>	2. ----- ----- ----- --업무(시설경비 업무 중 제7조제5 항 단서에 해당하 는 업무는 제외한 다)에----- -----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 음)	3. ~ 8. (현행과 같 음)
② 허가관청은 경 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정처분의 기	②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16. (생략) <u><신설></u>	----- ----- ----- ----- ----- -----.
③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u>17. 제7조제5항의</u> <u>규정에 위반하여</u> <u>경비업무의 전념</u> <u>성을 훼손하는 업</u> <u>무에 경비원을 종</u> <u>사하게 한 때</u>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먼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 종사 금지 완화(제7조제5항 단서 신설)와 관련하여,

김석기의원안은 경비업자가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업무에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관리

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이고, 한병도의원안은 시설경비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비업무에 대하여 그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비록 시설경비업무 외의 다른 경비업무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법과 같이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일률·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비업 전반에 대한 위헌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병도의원안과 같이 모든 경비업무를 대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현행법 제15조의2제2항,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3항 단서와 제28조제2항제9호³⁾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고,

3)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 6. (생략)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8. (생략)

② (생략)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경비업자가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⁴⁾.

다음으로,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필요적 허가취소에서 제외하거나(김석기의원안 제19조제1항), 임의적 허가취소로 완화하는 것(한병도의원안 제19조제1항·제2항)과 관련하여,

김석기의원안은 경비업자에 대한 필요적 허가취소 사유에서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무 중 제7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이고,

한병도의원안은 모든 경비업무에 대하여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우 필요적 취소사유에서 삭제하되,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 훼손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일률·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시설경비업무의 전념성을

4) 경찰청에 따르면 제15조의2제2항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실무상 같은 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임.

훼손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시킨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⁵⁾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가 된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는 개정안 제7조제5항 단서와 같이 시설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위반시 제재를 임의적 취소로 완화하는 것까지 반드시 요구되는 입법조치는 아니라고 보이나, 제재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시설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호송 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경비업무에 대해서도 동일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 그밖에 규제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봄.

5)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 6. (생략)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8. (생략)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현행법 제19조제2항⁶⁾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5

6)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16. (생략)

「경비업법 시행령」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